

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8. 11. 7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8. 11. 9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66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(1998. 11. 13) 상정
- 제67회 부천시의회(정기회)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(1998. 12. 10) 수정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도시개발사업소장 이현주)

가. 제안이유

- 98. 10. 10일자로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었으나 용지매각 및 개발이익금사업 등 공영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인계받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개정

나. 주요골자

- 부천시공영개발사업의 적용시한 연장(안 부칙 제2항)
 - 현행 : 1998년 12월 31일 폐지
 - 개정 :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 폐지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발이익금사업 마무리 예산의 추정비용은? ○ 공영개발사업을 종료하지 않는 이유는? ○ 공영개발사업 적용시한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? ○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할 계획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약 3200억원으로 추정함. ○ 중동택지개발은 부천시, 주공, 토공 3개 사업체가 공동으로 시작했으며 일부 사업이 진행중에 있음. ○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종료시점을 예상할 수가 없어 종료시점에 유연성을 두고자 했음. ○ 장기적으로 일반회계에 흡수할 계획임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

○ "별첨"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수정안 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제 69 호
의결년월일	98. 12. 11 (제67회)

제출년월일 : 1998. 12. 10

제 출 자 : 건설교통위원장

수정이유

○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해야 할 중동택지개발사업 중 현재 진행중인 용지 매각 및 개발이익급사업 추진의 연속성 도모와 사업 마무리에 의무감을 부여하고자 적용시한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함

주요골자

○ 부천시공영개발사업의 적용시한을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 폐지에서 2000년 12월 31일 폐지로 수정

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	부 칙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	부 칙 ①(시행일) (개정안과 같음)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1998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.	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이 종료되는 날 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	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부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시한)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.